

2026년도 UNIST 스타트업 테크업(Tech-Up) 로드맵 프로그램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

울산과학기술원에서는 동남권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2026년 UNIST 스타트업 테크업(Tech-Up) 로드맵 프로그램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8월 18일
울산과학기술원 총장

1

모집개요

- ☐ **사업개요** : 동남권역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BM 고도화, PoC, 투자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화 역량 강화
- ☐ **지원대상** : 동남권역 5년 이내 기술 기반 스타트업
- ☐ **지원내용** : BM 고도화 프로그램, PoC 및 투자 연계 지원 프로그램 등

< 참여기업 지원 내용(안) >

구분	세부내용
BM 고도화 프로그램	기업 진단, 비즈니스모델(BM) 분석검증, 전문가 1:1 컨설팅
PoC 및 투자 연계 지원 프로그램	실증 수요처 발굴 및 매칭, 투자사 연계, 투자 상담 지원
후속 관리	후속 투자 연계 등 상시 컨설팅 지원

- ☐ **선정규모** : 총 10개사 내외

※ 지원대상 기업 20개사 중 10개사 선정 완료, 잔여 10개사 추가 모집 예정

- ☐ **선정요건** :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전략 수립이 필요한 동남권 내 기술 기반 창업 기업

2

선정자 지원내용

□ **지원내용** : BM 고도화 프로그램, PoC 및 투자 연계 지원 프로그램 등

- ① **BM 고도화 프로그램** : 창업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진단 및 검증을 위한 시장조사, 전문가 컨설팅, 사업화 전략 수립, BM 진단보고서 제공 등 지원
- ② **PoC 및 투자 연계 지원 프로그램** : 대·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등 실증 수요처 연계, 실증 과제 기획 지원, 투자사 발굴 및 매칭, 정밀 투자 상담 등 지원

3

신청자격 및 요건

- ※ 창업기업은 '창업기업확인서'를 2026년 9월 2일(수) 18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※ '창업기업확인서'는 '창업기업확인시스템(cert.k-startup.go.kr)'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발급까지 10일 내외 소요되는 점 유의

□ **신청자격**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최초 모집공고일('26.6.11.) 기준 **창업 5년 이내인 자(기업)**
- ※ 신청자격(창업연한)은 최초 모집공고와 동일한 기준 적용을 위해 최초 모집공고일('26.6.11.) 기준으로 판단함

< 신청자격 세부조건 >

- **신청가능 업력** : 2021년 6월 12일 ~ 2026년 8월 18일
- **개인사업자**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- **법인사업자**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 - * 개인·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-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(개인·법인)을 보유한 경우,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([붙임2]의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 여부 필히 확인)

*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(개인, 법인)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

☐ 신청 제외 대상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(기업)

< ① 조건 예외 대상 (본 공고 마감일('26.9.2.)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(기업)

< ② 조건 예외 대상 (본 공고 마감일('26.9.2.)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[붙임3] 참고

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
⑤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
⑥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⑦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
⑧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(기업)

4

신청 및 접수

☐ 공고기간 : '26. 8. 18.(화) ~ 9. 2.(수), 18:00까지

☐ 신청·접수기간 : '26. 8. 18.(화) ~ 9. 2.(수), 18:00까지(18시 정각 마감)

* 상기 기간 내 제출완료 건에 한하여 인정, 마감기한 내 제출 필수(별도 유예 기간 없음)

□ **접수방법** : 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온라인 접수

- 온라인 참가신청 페이지 ([구글 폼 링크](#))

□ **제출서류**

- 지원계획서 1부 ※ [별첨 1] '사업계획서 양식'으로 작성(그 외 양식 제출 불인정)
- 기타 제출서류 1부 ※ [별첨 2] '기타 제출 서류' 참고

<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>

검토항목 및 제출서류	주의사항	비고
① 참가신청서	온라인 입력	
② 지원계획서 [별첨1] 양식	파일 첨부	
③ 기타 제출서류 [별첨2] 양식		

5

평가 및 선정

□ **평가 절차** : 창업기업이 제출한 신청자료에 대한 서면검토를 거쳐, 발표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

사업 신청·접수	선정평가		최종 선정
구글폼 접수 (담당자 메일)	서류서면검토	참여계획서 등 평가	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	발표평가	참여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	

※ 요건 및 자격검토는 모든 과정에서 진행되며 요건을 불충족할 경우 탈락 처리

※ 평가점수가 60점에 미달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

□ **평가 방법**

- ① **요건검토** : 신청자격 및 신청제외대상 등을 검토하여 미지원 대상 이거나 필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·선정 대상에서 제외
- ② **서류평가** :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(최종 선정규모의 3배수 내외)선정

③ **발표평가** : 발표 평가를 진행하여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선정

□ **평가지표**

< 평가지표(안) >

평가항목	항목별 평가 내용		배점
문제인식(20)	창업동기	아이템 배경 및 대표자의 사업화 의지	10점
	현황분석	목표시장(고객) 현황 분석	10점
실행가능성(20)	기술 성숙도	기술(준비 정도)의 구체성	10점
	구체화 방안	아이템 실현 및 구체화 방안의 적절성	10점
성장전략(40)	시장 수용도	비즈니스 모델 및 목표시장 적합성	20점
	시장진입 전략	시장진입 및 성과창출을 위한 계획/전략의 적절성	20점
기업구성(20)	자체 보유역량	대표자(기업), 재직 인력의 역량	15점
	네트워킹 역량	외부 자원을 활용한 사업추진계획	5점
합 계			100점

□ **최종선정**

○ 선정규모 내에서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대상을 선정

* 선정평가 결과 선정자의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6

유의사항

□ **신청 시 유의사항**

○ 동 사업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, 신청·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○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○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

하는 경우,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,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
*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-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은 1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발급 신청 필요

* 창업기업확인시스템 : cert.k-startup.go.kr

☐ 평가 중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-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

☐ 선정 후 유의사항
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'신청자격 및 요건'과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'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'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·운영됨
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중 선정자(대표자)가 불구속·구속 등으로 기소되어 사업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
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

7

기타사항

☐ 문의처

- (사업 문의) 울산과학기술원 창업육성팀 052-217-1373

붙임 1

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)

※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: cert.k-startup.go.kr / 문의처 : 1811-3773

신청기업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	불인정
		이종	창 업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불인정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창업 시	이종창업	창 업
		-	창 업
		폐업 3년 초과	불인정
		폐업 3년 까지	창 업
법인기업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창업 시	부도/파산 - 2년 초과	불인정
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 업
		-	창 업
		-	창 업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창 업
		-	창 업
		폐업 3년 초과	불인정
		폐업 3년 까지	창 업
	동종창업	부도/파산 - 2년 초과	불인정
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 업
		-	창 업
		-	창 업
법인기업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창업 시	동종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
	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
		-	창 업
		-	창 업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창 업
		-	창 업
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불인정
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 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 업
법인기업	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불인정
	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불인정
	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불인정
		이종	창 업

- ※ 위 표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(창업의 범위)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,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* 국가법령정보센터 : law.go.kr
- 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- 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1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- *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: kssc.kostat.go.kr
- 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- ※ 신청가능 여부 : "창업여부"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서 위 기준에 해당.
- ※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,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

붙임 2**지원제외 대상 업종**

- ▶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NO.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카지노 운영업	91242
4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5	그 외 경제질서,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